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877호 2022. 9. 14.(수)

거창후훈거창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97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94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
거창군 고시 제2022-100호 도로명주소 고시 ····· 5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1260호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 거창스포츠파크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6
거창군 공고 제2022-1264호 북상 산수(208호선) 확·포장공사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9
거창군 공고 제2022-1270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본대/지역대) 모집 재공고 ····· 13
거창군 공고 제2022-1280호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2
거창군 공고 제2022-1281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33
거창군 공고 제2022-1286호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42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2 - 97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94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21-183호(2021.12.31.) 등에 의거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94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교통시설:도로	군계획시설(소로2-294호선)사업	거창	가지	소로	2	294	367	8.0	소로2-293 ~ 거창읍 가지리 356-12	거창군 고시 제2021-183호 ('21.12.31.)	실시계획인가일 ~ 2024.09.30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무궁화신탁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포스코 P&S타워)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22. 9. 14.

○ 준공 예정일 : 2024. 9.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7,132	3,048					
1	거창읍 가지리	356	전	95	9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2	거창읍 가지리	356-1	전	43.0	4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3	거창읍 가지리	356-17	전	40.0	4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4	거창읍 가지리	356-8	전	21.0	21.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5	거창읍 가지리	356-11	전	41.0	41.0		권*진			
6	거창읍 가지리	356-12	전	489.0	489.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7	거창읍 가지리	1293-62	답	215.0	215.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8	거창읍 가지리	1293-63	답	134.0	134.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9	거창읍 가지리	1293-64	답	174.0	174.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10	거창읍 가지리	1293-60	답	277.0	277.0		이*순			
11	거창읍 가지리	1293-54	답	13.0	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12	거창읍 가지리	1293-55	답	80.0	8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13	거창읍 가지리	1293-65	답	84.0	84.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14	거창읍 가지리	1293-61	답	3.0	3.0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23, 504(아진캐슬상가)	㈜금호주택			
15	거창읍 가지리	1293-66	답	42.0	42.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16	거창읍 가지리	1293-67	답	106.0	106.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17	거창읍 가지리	1293-68	답	275.0	275.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18	거창읍 가지리	1312-15	전	48.0	4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19	거창읍 가지리	1314-1	전	384.0	384.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20	거창읍 가지리	1315-3	전	62.0	62.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21	거창읍 가지리	1700-8	천	4,108.0	40.0		국(국토교통부)			
22	거창읍 가지리	1718	구	27.0	27.0		국(농림축산식품부)			
23	거창읍 가지리	1719-6	도	47.0	31.0		국(국토교통부)			
24	거창읍 가지리	산109-1	임	4.0	4.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25	거창읍 가지리	산93-4	임	272.0	272.0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23, 504(아진캐슬상가)	㈜금호주택			
26	거창읍 가지리	산93-3	임	13.0	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27	거창읍 가지리	산94-7	임	35.0	35.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무궁화신탁			

5.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2 - 10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14.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315 등 2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추동길 68-34 등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2 - 1260호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 거창스포츠파크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1-96(2011.12.15.)호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 거창스포츠파크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09. 08.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3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명 칭 : 거창스포츠파크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공사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가. 부지면적 : 62,653㎡

나. 사업개요

종 류	위 치	사업규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육시설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342번지	62,653	62,653	6,630.94	6,087,.94	거고 제2011-96호 (2011.12.15.)	

다. 세부내용

동별	층별	용도 /구조	기정 연면적	증축 연면적 (변경)	소계	비고
주1	지상1층	운동시설 게이트볼장 /철근콘크리트	1361.55			
주2	지상1층	운동시설 테니스장,사무실 /철근콘크리트	140.55			
주3	지상3층	운동시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볼링장) /철근콘크리트	3,591.55			
주4	지상3층	운동시설 실내체육관 /철근콘크리트	2,949.10			
부1동	지상1층	제1종근생 화장실 /철근콘크리트	32.39			
주5	지상1층	운동시설 족구장 /강파이프구조		2,150.16		
주6	지상1층	운동시설 테니스장 /강파이프구조		3,887.78		
부2	지상1층	운동시설 물탱크실 /경량철골조		50.00		
합 계			8,075.14	6,087.94	14,163.08	

4. 사업 시행자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체육시설사업소장)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거창군 공보 제2022 - 1264호

북상 산수(208호선) 확 · 포장공사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예정인 『북상 산수(208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8일

거 창 군 수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로 확·포장

나. 명 칭 : 북상 산수(208호선)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예정지 : 경남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37-97번지 일원

4. 사업의 규모 : 도로 확·포장 L=960m, B=8.0m(B'=6.5m)

5. 사업의 목적 : 기존 농도가 협소하여 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어 확·포장 시행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별도첨부

7.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22. 9. 8. ~ 2022. 9. 21.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2, FAX 055-940-3529

다. 이의신청 : 토지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055-940-35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1,046,821	16,287					
1	북상면 산수리	산37-68	도	4,098	29		거창군			
2	“	206	전	624	72	대구 수성구 범어동 305-3 서한두레맨션 101-101	임*랑			
3	“	206-1	도	447	447		거창군			
4	“	산37-4	임	944,410	2,670		거창군			
5	“	184	대	444	23		박*옥			
6	“	184-1	도	6	6		거창군			
7	“	198	임	367	50		거창군			
8	“	196	전	163	108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5길 16-9	이*갑			
9	“	산37-27	도	92	92		거창군			
10	“	187	전	1,332	78		거창군			
11	“	187-1	도	136	136		거창군			
12	“	산37-28	도	591	591		거창군			
13	“	189	전	833	234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8-1 푸른솔마을 신성미소지움아파트 314-1103	임*적			
14	“	190	전	618	61	거창읍 금천동	김*수			
15	“	산37-95	임	6	6		거창군			
16	“	192-1	전	249	249		거창군			
17	“	192	전	819	77	부산 북구 화명동 2288 코오롱하늘채아파트 209-2002	김*자			
18	“	산37-48	임	55,395	539	서울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아파트 104-2506	김*도			
19	“	산37-97	임	873	873		거창군			
20	“	산37-98	임	219	219		거창군			
21	북상면 산수리	산52	도	1,023	1,023		국(건설부)			

22	“	산51	구	17,546	709		국(농림수산부)			
23	“	194	답	843	96		거창군			
24	“	산37-96	임	628	628	서울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아파트 104-2506	김*도			
25	“	1436	도	2,436	2,005		국(건설부)			
26	“	191	답	1,736	71		거창군			
27	“	산37-33	도	599	599		거창군			
28	“	산50	도	416	416		국(건설부)			
29	“	196-1	도	356	356		거창군			
30	“	1435	도	2,648	1,118		국(건설부)			
31	“	202-6	도	29	29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4번길15 101동901호(연산동, 연산동에스케이뷰)	임*아			
32	“	산37-56	도	136	136		거창군			
33	“	202-5	도	6	6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4번길15 101동901호(연산동, 연산동에스케이뷰)	임*아			
34	“	산37-32	도	982	982		거창군			
35	“	산37-26	도	1,263	1,263		거창군			
36	“	202	장	2,705	148		거창군			
37	“	202-4	도	3	3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4번길15 101동901호(연산동, 연산동에스케이뷰)	임*아			
38	“	202-3	도	6	6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4번길15 101동901호(연산동, 연산동에스케이뷰)	임*아			
39	“	202-2	도	33	33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4번길15 101동901호(연산동, 연산동에스케이뷰)	임*아			
40	“	202-1	도	1	1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4번길15 101동901호(연산동, 연산동에스케이뷰)	임*아			
41	“	산37-24	도	1,704	99		거창군			

<붙임 : 의견서 >

『북상 산수(208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인정 의견청취 공고에 따른 의견서

1.제 목		북상 산수(208호선) 확·포장공사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2.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거 창 군 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군 산림과 공고 제 2022-1270 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본대 지역대 모집 재공고

2022년 추기 및 2023년 춘기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22. 09. 13.

거 창 군 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본대) : 36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지역대) : 20명

읍·면	합계	거창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
인원	20	2	2	2	2	2	2	2	2	-	-	2	2

※ 남하면, 신원면은 접수인원 충족으로 접수마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전문진화대”라 함)

2. 종사업무

- 산불예방(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등) 및 산불진화활동
- 관할지역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야간순찰을 포함)
-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
- 산불방지업무 보조, 폭설·산사태 등 재난복구, 산림정화활동
-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 편성 지원
-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등

3. 사역기간

- 전문진화대(본대) : 2022. 11. 01 ~ 2023 05. 15(사역시작일은 변동가능)
- 전문진화대(지역대) : 2022. 11. 15 ~ 2023 05. 31(사역시작일은 변동가능)

4. 모집방법

- 1차 : 서류전형(30%) *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서류 검증
- 2차 : 실기시험(50%), 면접(20%)

※ 실기시험 : 직무수행력평가 실시(체력검정 및 필기시험)

※ 직무수행력평가 70점 이하는 탈락, 인원 미달시 60점 이상도 선발 가능

※ 1, 2차 합산하여 최종선발

5. 응시자격

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창군내 거주하는 자

나.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병력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다. 거창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토, 일, 공휴일 구분없이 연속 근무 가능한 자

마.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단말기 휴대(운영)에 동의한 자

바. 관할 지역의 지리, 산림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잇으며,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사. 1종보통, 2종보통(수동)면허 소지자(산불전문예방진화대(지역대) 응시자 해당)

6. 우대조건

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나.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에 해당하는자

다. 산림교육원 또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라.「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마.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바. 산불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초소감시원 포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7. 동점자의 선발 순위

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나. 취업취약계층

다. 직무수행력 평가 성적 우수자

라.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주민등록등본 기준)

8. 응시 제외 대상자(※2022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준수)

가. 날카로운 작업도구(기계톱, 애초기) 등을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 (청각장애, 뇌전증(간질), 정신질환 등)

나. 고교·대학교(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단, 야간대학생 및 6개월 이상 장기 휴학생은 제외

다. 공무원, 사학, 군인 등 공적연금 수령대상자

라. 과거 산림관련 사역 중 불성실자 및 중도 포기자

- 근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음주 등으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등

바. 기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근로 시작일 기준)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 1인 2개 이상 사업(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등)신청자

9. 감점 대상자(※2022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준수)

가. 반복참여자 :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자 **※ 선발총점의 20%를 감점하고 채용**

나.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①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자(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② 4억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 선발총점의 40%를 감점하고 채용**

10. 시험시행일정

접수기간 (토.일, 공휴일 제외)	실기시험 및 면접	원서교부 및 접수 (체력 및 면접장소)	합격자 발표
2022. 9. 13.(화) ~ 9. 16.(금)	2022. 10. 5.(수) ~ 7.(금) 예정, 개별통보	거창군청(산림과) (스포츠파크 운동장 일원)	2022.10월중 개별 연락

11. 합격자 발표 : 실기검정 후 합격자에 한해 유선 혹은 SMS(문자) 통보

12. 임금 및 근무조건

가. 일일인부임 : ‘22년 73,280원 / ‘23년 76,960원

나. 4대 보험 의무가입(근로자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다.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산불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야간 산불 포함) 반드시 출동하여야 함(주 1일 휴무, 월 1회 연차)
- 사업특성상 휴일(토, 일) 근무를 실시하며, 평일 대체휴무함.
- 우천 및 강설 등 산불발생위험도가 낮을 경우 휴무 조치(임금 미지급)

13. 응시원수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처 :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나. 응시원서 접수처 :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

14. 제출서류

공 통 서 류	선 택 서 류(해당자에 한함)
1.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 필요 3.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4. 경력 및 이력서 1부, 서약서 1부. 5.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6. 구직등록증 1부.	1. 취업취약계층 증빙 관련서류 2. 운전면허증 및 본인소유 자동차등록증 3. 자격증.교육이수증명서 4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합격 후 제출)

※ 서류 제출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자격증, 교육이수증명서 등 가산점을 위한 선택서류 사본 미제출시 가점제외

1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산불위치관리시스템」 시행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지급 계획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우리 거창군에서 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좌표, 긴급메시지 전달

기능 등)를 수집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발제외됨을 사전 알려드립니다.(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 제4항 의거)

나. 선발시 면접, 실기시험 등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이때 선발방법과 채점기준은 자체적으로 별도 평가 기준을 정하여 실시할수 있습니다.

다. 임무수행 거부 및 주요범죄,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산림 내 흡연 등 근무태만의 경우 참여를 불허 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당일 3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면접 및 실시시험 불참자는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마. 제출서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모집공고는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변경시 별도 공고)

사. 실기시험에 따른 준비물 : 운동화, 체육복, 필기도구, 손목시계 등
※ 필기시험 시 휴대전화는 반입을 금지합니다.

아. 최종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자. 본 공고에 의하여 모집된 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작거나 같다 하더라도 모든 응시자가 합격통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산림과(☎940-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경력 및 이력서 1부.
4. 서약서 1부.

□ 산불전문진화대원 본대
□ 산불전문진화대원 지역대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저소득층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22년 한시적용**)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주 요 경 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사업 (체크 필수)	□ ( ) 읍·면 ***지역대만 해당**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1 본 신청서는 본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본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 • 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경 력 및 이 력 서

<table>
<tr><td rowspan="2" colspan="2">성 명</td><td>한 글</td><td></td><td>성 별</td><td>남 · 여</td></tr>
<tr><td>한 자</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 colspan="2">생년월일</td><td></td><td>주 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주요이력
(교육사항 포함)</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소지 자격증</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고용
기간</td><td>산불방지
관 련
근로기간</td><td colspan="4"></td></tr>
<tr><td>기 타
산림사업</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기 타</td><td colspan="4"></td></tr>
</table>

※ 교육사항은 수료증 사본,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첨부

서　　약　　서

□ 서약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경남　거창군　　읍(면)　　길/로

(세부주소)　(　　)

□ 응시분야

○ 분　　야 : 전문진화대(본대/지역대)　선발 체력검증

□ 주의사항

본 응시 분야는 전문진화대(본대/지역대)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채용 후 어느 정도 체력을 요하는 업무로서 체력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과거 병력이나 본인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응시여부를 판단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인은 동 응시분야 체력실기(①등짐펌프(15kg) 착용 후 2km 도착시간 측정, ②호스(20kg) 50m 끌어당기기 시간 측정) 테스트에 임하면서 주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본인의 체력에 맞게 응시할 것을 서약하고 아울러 무리하게 시험에 응하여 닥칠 수 있는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100% 책임을 지며 거창군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성명　　(서명)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공고 제2022-1280호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가. 위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 변경

나. 누구나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

3.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 입법례에 맞게 목적조항 변경(안 제1조)

나. 법령개정사항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명, 제2조)

-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육성위원회

다. 위원장 변경(안 제2조)

- 군수 ⇒ 부군수

라. 위원의 해촉 신설(안 제4조의2)

마. 자치법규 입안원칙 및 용어순화 등 정비함(제2조·제3조, 제5조~제8조)

- 인 ⇒ 명, 자 ⇒ 사람, 기타 ⇒ 그 밖에, 회무 ⇒ 업무
- 군수의 자문기구인 위원회 회의록 작성주체 변경: 위원회 ⇒ 군수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2. 9. 13. ~ 10. 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0. 3.(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1) 주소 : (우50130)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인구교육과)

2) 전화 055)940-8701, 팩스 055)940-8709, 이메일 nbijou3@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 【☎(055)940-87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부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문”을 “회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을 “업무를 총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개회”를 “시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를 “군수”로 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거창군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거창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2조(구성) ① 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거창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군수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

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연혁]

□「청소년기본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13조(지방청소년위원회) ①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自治區를 말한다)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 12. 29.>
②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 12. 29.>

청소년기본법
[시행 2005. 2. 10.] [법률 제7162호, 2004. 2. 9., 전부개정]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규정하고, 종전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별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관련법을 체계화하는 한편,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부 칙 <법률 제7162호, 2004. 2.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생략)
제3조(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
제4조~제6조 (생략)

□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대면회의에 한정한다)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수집 또는 안건검토 등 심사를 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서면보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거창군의회 의원인 위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 **「거창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와 성비규정준수 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은 최대 4개 위원회까지 위촉할 수 있고, 같은 위원회에서는 최대 3회까지 연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제8조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11조의 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2-1281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가. 캠핑장 내 시설 사용료 현실화로 시설 운영 원활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

나. 데크 신규 설치 및 다목적실 설치에 따른 사용요금 신설

3. 주요내용

가. 거창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기준 변경 및 신설(안 별표 2 다목)

1) 사용료 기준 인원 현실화함

2) 일반데크를 전기데크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데크 삭제

3) 캐빈하우스, 방갈로, 전기데크(5m×5m) 사용료 변경

4) 신규 전기데크 및 다목적회의실 사용료 기준 신설

나. 사용료 감면 근거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3, 부칙 제2조)

1)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변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2. 9. 13. ~ 10. 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0. 3.(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1) 주소 : (우50130)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인구교육과)

2) 전화 055)940-8701, 팩스 055)940-8709, 이메일 nbijou3@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 【☎(055)940-87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구분	규 격	사용료			
		주중	주말	성수기	추가부담
캐빈하우스 (4동)	복층, 기준인원 **4명**, 최대인원 6명	**100,000원**	100,000원	140,000원	1)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 2) 추가 1명당 10,000원
방갈로 (3동)	단층, 기준인원 3명, 최대인원 4명	**80,000원**	80,000원	120,000원	1)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 2) 추가 1명당 10,000원
전기데크 (14개소)	5미터×5미터, **4인용**	**30,000원**	30,000원	**40,000원**	1) 1시간 초과 마다 3,000원 2) 추가 1명당 3,000원
전기데크 (5개소)	**6미터×8미터, 4인용**	**40,000원**	**40,000원**	**50,000원**	**1) 1시간 초과 마다 3,000원 2) 추가 1명당 3,000원**
다목적 회의실	**20인용**	**시간당 20,000원**			

비고

가) 부가세는 별도임

나) 아동일 경우 36개월 이상부터 1명 요금 부과

다) 장비(텐트, 코펠 등을 말한다) 임대료는 별도

라) 사용 시간 <신 설>

(1) 캐빈하우스, 방갈로, 데크: 그날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2) 다목적회의실: 9시~21시

마) 기간 구분

(1) 성수기: 7월~8월

(2) 주말: 성수기를 제외한 주말(금요일·토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주중: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날

별표 3 제8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규칙 제정시행가능(법제처 정비대상) 하므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없음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6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3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시행 2019. 12. 1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2019. 12. 9., 일부개정.]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2-1286호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조례 제정 필요

나.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 마련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을 규정함(안 제2조~제6조)

나.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24조)

라. 부칙으로 시행일과 시행 전 준비 허용사항을 규정함(부칙 안 제1조~제4조)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2. 9. 13. ~ 10. 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0. 4.(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행정과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층 행정과

2) 전화 055)940-3182, 팩스 055)940-3169, 이메일 flyhak80@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주민자치담당[☎(055)940-31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의견 제출서**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 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거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기타 상품 · 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 · 채취된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 · 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

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거창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거창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거창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거창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기타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거창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거창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거창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 · 판매 여부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거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 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거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서 제5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용 및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용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해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부금계좌가 일반회계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이체하여 관리·운용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붙임 2 관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 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 ·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 · 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 · 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 · 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부 · 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 · 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2. 호별 방문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 ·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 · 독려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 · 신용카드 · 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 · 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 · 독려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자
5.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 ·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 · 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 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 · 예술 · 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 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 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5.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7.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반사실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 접수 제한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 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보매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 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 ·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 · 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 ·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은 매년 9월 말일까지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 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 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라. 모금 · 접수 제한기간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 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관보 또는 공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정보시스템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4. 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 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 · 업무가 위임 ·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 업무를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3. 법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의 제공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5.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제한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한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제한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제한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가중된 처분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처분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한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고용관계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	2개월	4개월	8개월
2.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	2개월	4개월	8개월
3.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	1개월	2개월	4개월
4. 법 제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2호	1개월	2개월	4개월
5. 법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호별 방문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2호	2개월	4개월	6개월
6. 법 제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2호	2개월	4개월	6개월
7.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이 영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2호	1개월	2개월	4개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부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기 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 부 금 액	금 원(₩)	
기 부 대 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답 례 품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신청 [ ]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함 [ ]	
	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귀하

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가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위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부자가 직접 작성하여 기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답례품에 관한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별도의 답례품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160g/㎡)